

전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나121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나12199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12. 8 선고 2019가단110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최용준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1. G

2. H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혁

피고, 피항소인 1. I

2. J

3. AE

변 론 종 결 2021. 10. 20.

판 결 선 고 2021. 11. 17.

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12. 8. 선고 2019가단11003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선정당사자) G, 선정자 L, M, N, AC, AD은 제1심 판결의 별지 상속분 계산표(망 P)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H, 피고 I, J, 선정자 Q, R, S, T, U, J, V, W, X, Y은 제1심 판결의 별지 상속분 계산표(망 Z)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45. 1. 23. 접수 제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AE는 원고들에게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심 판결의 별지 상속분 계산표(망 AA)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1944.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창민, 판사 조지환, 판사 나상훈

별지